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26 발의연월일: 2022. 9. 23.

발 의 자: 김수흥·강득구·김민석

맹성규 · 민병덕 · 송재호

안규백 • 이명수 • 조정식

한병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3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러시아-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기후 온난화 등의 요인으로 국제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, 한국농어촌공사의 농 업 관련 사업 시행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.

이에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시행의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(안 제1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나목 중 "2022년 1 2월 31일"을 각각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	제13조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
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 ① (생	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	②
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	
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	
를 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 감면	<u>2027년 12월 31일</u>
한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1의2. 한국농어촌공사가 「농어	1의2
촌정비법」에 따른 국가 또는	
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	
정비계획에 따라 취득·소유하	
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	
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	
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	
감면한다.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2022년 1월 1일부터 <u>2022</u>	나 <u>2027</u>
<u>년 12월 31일</u> 까지는 취득	<u>년 12월 31일</u>
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	
0을 각각 경감한다.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